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신청 전 필독사항!

2026년도 사업의 지원금 신청은 6개월 / 3개월 / 3개월 총 3회차입니다.

2026년도 사업의 첫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통장사본(최초 1회만) 함께 제출바랍니다.

지원금 신청대상기간에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바랍니다.

※ 증빙 기간 확인방법

지원금 신청 안내 메일 <본문 표>를 통하여 신청대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업연도	기업	이름	정규직채용일	증빙 시작월 (귀속기준)	증빙 종료월 (귀속기준)	회차	신청금액
2026	기업명	청년명	2026-01-08	1월	7월	1회차	3,600,000

예시의 경우

<귀속기준 1월 ~ 7월>의 <급여명세서와 이체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청년 인센티브 신청은 **기업지원금 지급일 익일(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전 필독사항!

제출 서류 안내

1. 기업통장 사본(지급 받으실 통장, 최초 1회시에만 제출)
2. 근로계약서
 - 앞서 제출하셨던 기업에서도 제출 바랍니다(갱신 된 경우, 2개(기존+갱신) 모두 첨부 바랍니다)
 - 근로계약 기간: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명시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규직 채용**'요건 충족.
 - 연봉계약 기간: 1년 단위의 연봉 계약은 임금 산정 주기를 의미하며, 이는 고용 신분(정규직)과 무관함
3. 급여명세서 (**이메일 안내 참조**)
4. 급여이체 확인증 (**이메일 안내 참조**)

신청 전 필독사항!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 되셨을 때

다음 안내에 따라서

신청 바랍니다.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전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채용준비

교육훈련

고용장려금

확인·신고



인재찾기



구인신청



구인관리



맞춤인재정보



외국인고용신고



사업주 외국인관리



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1)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접속

2. 기업 로그인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마이페이지(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마이페이지(기업)

회원정보

맞춤정보

민원신청 현황

서비스이력

구인관리

참여 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일경험프로그램 관리

-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신청관리

채용자명단관리

지원금관리

사업만족도

기업정보

회원정보수정

사업장명	진주상공회의소	대표자 성명	허성두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상대동)		

참여신청 현황

프로그램 정보	운영기관	추가 작업
등록된 참여신청서가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2)

1. 마이페이지 클릭

2. 참여 사업관리 클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클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3)

참여신청관리

채용자명단관리

1

지원금관리

사업만족도

기업정보

회원정보수정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소

지원금 지급 현황

프로그램 정보

운영기관

고용센터

비고

1. 지원금관리

2. 사업연도 2026년 확인

3. 지원금 신청 클릭
- 사업연도 2026년 맞는지 한번 더 체크!

지원금신청번호 : P2025

지원금 신청 현황

담당운영기관		고용센터	
신청일자		접수일자	
지급일자		처리상태	
지급구분			

대표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기업유형			
주소			
피보험자 합계	7 명	설립일	2020

1. 기재된 내용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5)

첨부파일

- 파일용량은 10MB 이하이며, 1개 파일 업로드 가능합니다.
- 등록 가능 파일 : gif, jpg, jpeg, bmp, png, ppt, pptx, doc, docx, hwp, xls, xlsx, pdf, txt, zip, egg

1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첨부파일 등록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원하는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오세요.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첨부파일 등록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원하는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오세요.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타서류

기타서류

첨부파일 등록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원하는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오세요.

2

은행명

--- 선택하세요 ...

예금주명

예금주명을 입력해 주세요.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계좌번호는 "-"없이 숫자로만 입력해 주세요.

1. 첨부파일

- 개수가 많은 경우, 압축 또는 병합하여 첨부
-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메일로 제출

파일이 항목당 1개 밖에 업로드가 되지 않아
압축 및 PDF 병합 작업이 어려운 담당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아래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kimtiger@korcham.net)
(kmc9112@korcham.net)

2. 지급받을 계좌내용을 기재

- 제출한 통장사본과 동일한 계좌여야 함
- 계좌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통장사본 새롭게 제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6)

신청내용

삭제 -

1
추가 +

2

선택	성명	신청기간 (신청회차)	2023-07-01~2023-09-30(3회차)			
☐	주민등록번호	지급기간				
	채용일	2023-01-01	월 보수액	2,010 원	주 근로시간	주 40시간
	채용구분	정규직 채용	장려금 신청금액	1,800,000 × 1,800,000원		
	☐ 정규직전환일		장려금 검토금액	0원		
	채용종료일		장려금 지급금액	0원		
	지원종료일		비고(운영기관, 고용센터 조회 가능)	비고(운영기관,고용센터 조회 가능) ×		

신청대상기간은 지급차수별* 대상기간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대상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음

▼

1. 추가

- 지원금 신청 대상자를 팝업 창에서 선택

2. 신청내용 확인

- 신청기간, 신청회차, 신청금액 등 자동입력된 사항 확인

<신청대상이 여러명인 경우>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①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지원금에 대하여 신청

② 지원금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 지원금 신청기간만큼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근속 후 신청

<대상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① 6개월 근속을 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금 신청 불가로 퇴사여부 전달바랍니다.

②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만근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 가능(월할계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8)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장려금신청시 기준) *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1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취업애로청년요건 ①~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1. 지원대상 청년 요건 확인
 - 지원 가능한 청년인지 기업에서 셀프체크

→ 지원대상 청년인 경우, “예”로 체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9)

1
기타

①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신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확인
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확인

사업주명
사업주명을 입력 x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 x - 주민등록번호 뒷자 x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 사업주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선택해주세요.)

(필수)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목록
결정통지서

임시저장
신청

1. 확인서

- 확인을 누르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2. 신청

- 신청버튼 누를 시
지원금 신청서의 상태는 <신청>으로 변경됨
<신청취소>하여 수정가능

※ 임시저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임시저장 신청서와 신규 신청서의 충돌)

주의사항 안내

1. 인위적 감원 발생 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사업참여 신청단위(법인전체, 개별사업장)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으나 즉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제한기간 3개월 동안 신규채용 인원은 제한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지원 불가합니다.

2. 참여청년이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 최소고용기간(6개월)이 미충족되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참여청년이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

- 고용보험 상실일자까지,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 의 처

기획조사부 김민찬 사원 / 김대호 주임

Tel 055-753-0432

Tel 055-753-0412

Fax 055-758-8220